

#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29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1일

발 의 자: 박수빈, 김영철, 김원태,  
민병주, 박승진, 봉양순,  
서준오, 아이수루, 왕정순,  
, 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  
이원형, 임만균, 전병주,  
홍국표 의원(16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(안 제3조제1항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 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50퍼센트”를 “100퍼센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 번호

2023100600000028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수빈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6.

회신일 : 2023.10.1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제1항제6호 도시안전분야의 기준보조율을 ‘50퍼센트 까지’ 에서 ‘100퍼센트까지’ 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   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3호 도시안전 분야 기준보조율의 최대범위를 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인 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2023년 본예산 기준, 도시안전분야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은 26개이나 기준보조율 변경시 각 사업에 대한 25개 자치구별 구비 편성 총괄현황이 없고 또한 각 사업마다 상위법령에 따른 매칭방법 등이 달라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- ※ 참고자료로 2023년 본예산 기준, 도시안전분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현황을 붙임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붙임 > 2023년 서울시 도시안전 분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세부사업	지방보조금액	비고
1	예비군 육성 지원	350,000	
2	시민 안보의식 함양	214,810	
3	시민 안보의식 함양	19,000	
4	민방위교육운영비	583,843	
5	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	24,225	
6	민방위 장비 보급·확충	6,651	
7	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	578,340	
8	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	8,100	
9	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(자치구)	129,200	
10	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	990,000	
11	안전취약시설 등 보수·보강 사업	3,000,000	
12	집중안전점검 활성화	200,000	
13	재난심리회복 지원	81,824	
14	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	407,232	
15	시민 안전교육 강화	714,000	
16	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	250,000	
17	재난피해자 회복·치유 프로그램	22,000	
18	제설대책추진	6,074,000	
19	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	69,876	
20	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지원사업	200,000	
21	국가하천 유지보수	6,925,000	
22	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	11,546,000	
23	하수관로 유지관리비	90,000	
24	자율방법연합회 지원	250,000	
25	협력단체 지원(전환사업)	468,530	
26	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(전환사업)	6,797,309	